

		<h1>보도 참고</h1>	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0056b3; color: white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 주거복지 로드맵 </div>		배포일시	2018. 4. 19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당자	·과장 유삼술, 사무관 유상철, 주무관 김준영 ·☎ (044) 201-3392, 338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동아일보 “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엇장수 마음대로” 관련

-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부담금의 객관성·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
 - 다만,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준공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, 예정액 산정이라는 특성상 일부 가정은 불가피합니다만,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부담할 추가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분양 신청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 - 정부는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하였고,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.
 - 또한,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구조이며, 부과 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 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
- 또한 부담금의 조합원에 대한 배분은 관리처분에 포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4.19.) >

◆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연장수 마음대로?

- 미래 추정치 근거 산정 혼란 예고
- 조합원간 배분 가이드라인 없어 분쟁 악화뎀 사업추진 무산 우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